



제418회 국회 (임시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몰수 대상의 범위 확대 및 제3자에 대한 추징 도입〉
■ 장경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500호)

2024. 12.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동 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수익 등에 대한 독립몰수제 도입	3
2. 제3자 재산에 대한 추징 규정 신설	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장경태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9. 2.
3. 회 부 일 : 2024. 9.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폭력 진압으로 정권을 찬탈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은 해당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재산을 축적했음. 과거 대법원은 이들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하고 추징을 선고하였으나 해당 추징금의 일부는 환수되지 못하였음.

지난 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폭로하였음에도 몰수·추징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최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녀 노소영이 이혼소송 과정 중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의 존재를 밝힌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어떠한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현행법에 따르면 범죄행위자의 사망 등의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법적으로 축적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몰수나 추징을 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과 같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

수익 등에 대하여는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몰수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 따르면 제3자에 대해서는 몰수만 가능할 뿐 추징이 불가능한바, 제3자에 대한 몰수 요건이 충족되었으나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해서도 추징이 가능하도록 하여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제4호의2 및 제10조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수익 등에 대한 독립몰수제 도입

- 개정안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수익 등에 대하여는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몰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①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1. ~ 4. (생략) <u><신설></u>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① --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범한 사람이 얻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산 및 그 범죄 행위에 터잡아 획득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같은 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같은 법 제359조 또는 제360조의 각 행위로 얻은 재산은 행위자의 사망 또는 범죄의

현행	개정안
5.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산의 과실 또는 대가로 얻은 재산 또는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그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 ② · ③ (생략)	<u>공소시효 만료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u> 5. 제3호, 제4호 또는 제4호의2에-----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 현행 형법 제49조¹⁾는 몰수를 다른 형벌에 부가하여 가함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공소 제기를 전제하지 않는 독립몰수제도는 인정하지 아니하되, 선고유예 등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 몰수의 요건을 갖춘 경우 예외적으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몰수의 부가성으로 인하여 범인의 사망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범죄수익이 몰수되지 못하고 상속인이나 다른 공범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고, 범죄수익의 박탈과 재범방지라는 몰수제도의 목적을 충실히

1) 제49조(몰수의 부가성)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달성하지 못한다는 형사정책적 문제가 발생해 왔다는 지적이 있음.

□ 개정안은 행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몰수만을 독립하여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독립몰수제”를 내란의 죄 등을 범한 헌정질서 파괴범죄²⁾자에 한정하여 도입하려는 것으로, 동 범죄수익 등을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범죄의 동기가 되는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고 나아가 사회정의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헌정질서 파괴범죄인 내란, 외환, 반란 및 이적의 죄는 재산범죄가 아니나, 개정안에 따라 해당 범죄행위와 연관되어 획득한 재산에 대하여도 독립몰수제를 적용한다면 헌정질서 파괴범죄로부터 파생된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몰수하는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와 UN반부패협약(UNCAC)³⁾은 유죄판결 없이 범죄수익 또는 수단을 몰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함.⁴⁾

2)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헌정질서 파괴범죄”란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와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利敵)의 죄를 말한다.

3) 우리나라는 2008. 2. 29. 비준하였음.

UN반부패협약 제54조제1항제c호

1. 각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의 실행을 통하여 취득하거나 이와 관련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이 협약 제55조에 의한 사범공조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c. 범죄인이 사망·도주 또는 부채를 이유로 소추될 수 없거나 그 밖의 적절한 경우, 유죄판결이 없이 그러한 재산을 몰수하는 것을 허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검토한다.

4) 박성진, “독립몰수제도 도입에 관한 최근 입법동향 및 개선방안”, 「법조」 제71권 제1호, 2022, 310~355p

□ 다만, 개정안에 따른 독립몰수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우선, 독립몰수제가 도입될 경우 「형법」에서도 일반 몰수에 대한 독립몰수제 도입 논의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독립몰수제의 도입 필요성과 범위 및 현행 형사법체계와의 조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현재 독립몰수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967호,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및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0417호, 윤종오의원 대표발의)이 각각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임.

○ 또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⁵⁾ 등의 몰수 특례법은

5) 「공무원몰수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고지) ①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때 이 법에 따라 피고인 외의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재산이나 지상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몰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재산을 가진 자나 그 재산상에 지상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로서 피고인 외의 자(이하 “제3자”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계속(係屬) 중인 법원
2.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명 및 피고인의 성명
(이하 생략)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3조(고지) 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피고인 외의 자의 재산이나 지상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재산을 가진 자나 그 재산상에 지상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로서 피고인 외의 자(이하 “제3자”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다음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계속(係屬) 중인 법원
2.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명 및 피고인의 성명
(이하 생략)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고지) ① 검사는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외의 자(「정치자금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피고인이 된 정당·후원회 또는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의 재산 또는 지상권·저당권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의 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몰수가 공소 제기를 필요로 함을 전제로 조문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다른 개별법상 몰수 규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개정안에서 독립몰수제도를 도입할 경우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는 때에는 즉시 위 재산을 가진 자 또는 그 재산 위에 지상권·저당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로서 피고인 외의 자(이하 “제3자”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다음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치자금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피고인이 된 정당·후원회 또는 법인·단체의 경우 제1호·제2호 또는 제7호의 사항에 대한 고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2.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명 및 피고인의 성명
(이하 생략)

2. 제3자 재산에 대한 추징 규정 신설

- 개정안은 제3자에 대한 몰수 요건이 충족되었으나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추징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10조(추징) ① (생략) <u><신설></u>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 제1항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제10조(추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범인 외의 자로부터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 ----- -----.

- 현행법 제10조⁶⁾는 불법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에게서 추징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²⁷⁾는

- 6) 제10조(추징)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 7) 제10조의2(추징 집행의 특례) 다중인명피해사고 발생에 형사적 책임이 있는 개인, 법인 및 경영지배·경제적 연관 또는 의사결정에의 참여 등을 통해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대한 이 법에 따른 몰수대상재산에 관한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

다중인명피해사고 발생에 형사적 책임이 있는 개인, 법인 및 경영 지배·경제적 연관 또는 의사결정에의 참여 등을 통해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가 범죄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제3자를 상대로 추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 제10조제2항은 불법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인뿐만 아니라 범인 외의 자에 대해서도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과 같이 제10조에 따른 추징 대상에 범인 외의 자를 추가할 경우 이를 통하여 은닉되는 범죄수익에 대하여도 철저한 환수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유사 입법례인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⁸⁾에서도 불법재산 등에 대하여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추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개정안에서는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범인 외의 자로부터 추징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는데, 현행법 제9조제1항 단서는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특한 몰수대상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

8) 제9조의2(불법재산 등에 대한 추징) 제6조의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인바 해당 규정을 범인 외의 자로부터
의 추정 근거로 보기에선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음.

문 의 처

02)6788-5073
